

제175회(정례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면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4면
3.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7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69
------------	------

제출년월일 : 2007. 5.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대한민국의 문화 및 관광중심인 종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종로를 건설하고,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 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국 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 나. 관광활성화 전담기구인 『관광과』 신설(안 제4조제1항)
- 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 통합(안 제6조제1항)
- 라. 업무의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부서간의 소속 국 이동
(안 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 마. 방재업무 강화를 위한 부서재편(안 제8조제1항)
- 바.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팀 신설(안 제4조제2항)
- 사. 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명칭 등은 부칙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예산사업
 - 총액 : 20,000천원(시설비 10,000, 자산취득비 10,000)
- 다. 기 타
입법예고(2007.4.6 ~ 2007.4.26)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기획재정국·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

②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행정국) ①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과, 관광과 및 여권과를 둔다. 다만, 자치행정과는 여유기구로 한다.

②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건립·유지관리·보안·방호에 관한 사항
2. 주요행사·회의·의전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지원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
6. 보수·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8. 직원 능력개발·교육에 관한 사항
9. 의회업무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10.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직원 후생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선거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4.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자율방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동 근무직원 경력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17.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19. 동 행정에 관한 사항
20.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
21.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
22.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3. 새마을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5.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조직·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주민소득지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9.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0.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1. 전시민방위운영계획·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2.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3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4. 민방위훈련 및 화생방 운영에 관한 사항
35.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36. 관인 및 문서에 관한 사항
3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8. 대한민국 전자정부(G4C)에 관한 사항
39.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0. 호적에 관한 사항
4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2.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
43. 종교 및 예술법인에 관한 사항
44. 문화재에 관한 사항
45.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46.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7. 관광관련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8.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9. 생활체육·건전생활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0.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1. 무도장·무도학원의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
52. 일반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53. 여권의 반납, 분실 및 소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
54. 여권의 몰취,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55. 다른 국 및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5조(기획재정국)①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기획·조정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8. 구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10.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공사 도급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12.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세입, 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5. 세입 및 현계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 총괄지도 및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
17. 재산세·취득세·등록세·지역개발세·농지세 및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 법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9.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20. 과세표준액 시가조사 및 책정에 관한 사항
21. 차량취득세·차량등록세·자동차세·면허세·도축세·경주마권세·주민세·사업소세의 부과·징수 및 환불에 관한 사항
22.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23.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4.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 및 증명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25. 지적공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적측량 및 토지의 이동 정리 등에 관한 사항
2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28. 토지의 거래허가 및 취득신고 등에 관한 사항
29. 지가의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30.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31. 도로명 주소(새주소) 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환경국) ①복지환경국에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및 산업환경과를 둔다.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5.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7.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9. 보육에 관한 사항
10.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1. 여성·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소관 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단독정화조 신고(설치, 준공, 협의) 및 대행업체에 관한 사항
15.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복무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8.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 관리에 관한 사항
 20.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위탁처리 관리에 관한 사항
 21.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사업장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2. 시장의 지도·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3. 물가조사·지도 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24. 연료판매소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26.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7. 농·축산 및 수산유통에 관한 사항
 28. 지역 균형발전 및 종로 귀금속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0.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31.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2.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4. 중수도(재활용)·저수조 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도시관리국) ①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 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 및 주택임대사업에 관한사항
 2. 주택관리업 등록 및 주택건설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주택통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민영주택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5.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
 6. 무허가 건물 발생 방지 및 철거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심재개발·불량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9.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12.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13. 건축사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5. 일반지역 내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중·대형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8. 승강기 관리·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9. 지구단위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20.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시공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2. 위험절개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3.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생태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4. 가로수·녹지대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5. 조경사업(학교공원화, 옥상녹화, 담장녹화, 수경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건설교통국)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계속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가스시공업 및 골재채취업 등 건설업면허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6.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7.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1. 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재난대비 교육·훈련
13. 하수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하천 및 수해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16. 배수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18.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9.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항
20. 지역교통종합대책 및 비상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22. 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
23. 교통소통개선사업, 교통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4. 법령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5.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26. 운수과징금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8. 노상·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 내 주차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9.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30.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1.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9조(보건소의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보건소장) ①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

②보건소에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를 둔다.

③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하부 행정기관

제12조(동의 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직무) ①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업무, 민방위업무,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순찰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동장은 제1항의 사무 외에 구청장의 명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종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의 상황실란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건설복구·수송지원반란중 반원에 “치수방재과”를 추가하고, 홍보지원반란중 “문화진흥과”를 “문화과, 관광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의 총괄지원반란중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를 “행정민원담당주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주민생활계획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주민선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5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문화진흥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를 “문화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종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과장, 주민생활계획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⑭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민생활계획과”를 삭제한다.

⑮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여성담당주사”를 “여성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⑯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청소년담당주사”를 “여성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⑰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재정경제국장”을 각각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⑱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중 “재정경제국장”을 각각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재난기획담당주사”를 “치수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재난기획담당주사”를 “치수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⑳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중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가목중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수궁길 22(옥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역